

## 10.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

### 10-1 제안 배경

환경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환경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환경복원 등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즉각적인 대응은 환경정의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선 오염자 책임원칙,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선 과거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비용분담원칙,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재정적 책임제도, ‘석면피해 구제법’에선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1995)에서는 토양오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여 오염시 이를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이나 생태계에 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복원을 요구하는 제도가 없으며 OECD도 우리 정부가 보고한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 책임,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연대책임 등의 주요 원칙을 가지고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유발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 환경피해 주민들의 구제급여신청이 거부 되면서 나타나듯 2년여에 걸친 역학조사를 통해 환경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30일간의 형식적인 예비조사를 통해 환경피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구제급여를 신청한 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피해구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 구제제도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발생, 유해물질의 도달만 소명되면 환경오염피해가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의 규정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의 ‘원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구에 의하여 환경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축소 해석.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도록 하여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에 기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구에 의하여 환경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거나”의 문구로 대체함으로써 구제급여 신청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시설이 아닌 개발 등에 의한 피해나 사람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이 아닌 하천, 생태계 등에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개인의 사적 이익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생태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데 환경오염피해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생태적 손해에 대해서 공법상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 환경손해법).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단체는 생태환경피해에 대해서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거나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조작이나 가습기 살균제문제에서 보듯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중 일부가 기업 등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사람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의 효력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김포시 환경피해 사례의 경우도 역학조사를 통해 폐암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해당 주민들의 상당수가 노인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확인 및 보상을 받는 게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환경피해 집단소송제가 환경약자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10-2 정책 과제

- 환경오염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수질 및 생태계 피해에도 공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
- 생태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단체에게 소송자격 부여
- 환경분야 집단소송제 도입